대한삼보연맹 위원회 및 위원장 자격

1 스포츠공정위원회

❍ **법제, 포상, 징계 등의 공정한 심의를 통한 삼보 스포츠계 전반의 공정성 확립을 목적으로 함.**

- 대한삼보연맹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대한삼보연맹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
- 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
- 임·직원 및 연맹에 등록된 지도자·선수·동호인·심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
- 대한삼보연맹과 관련단체(그 구성원을 포함한다)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(경기, 제도, 단체운영 등)의 조정.중재
-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〈 스포츠공정위원 선임 요건 〉

◆ 법학자,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
◆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◆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◆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※ 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,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.
(체육회와 체육회 관련 단체의 임·직원인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)

2 경기력향상위원회

❍ **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업무를 검토하고 시행하여 우수한 삼보선수를 확대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으로 삼보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**

- 국가대표선수 선발 및 훈련계획 수립
-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
- 과학적인 훈련방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
-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
-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사항

〈 위원 선임 요건 〉

◆ 대한삼보연맹 임원, 위원장, 국가대표 감독, 국가대표 선수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
◆ 스포츠 분야의 현직 교수 및 교사, 삼보지도자로 5년 이상의 선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
◆ 기타 이사회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

3 국제협력위원회

○ **국제스포츠 활동에 대한 장·단기 대책 수립과 국제대회 참가 및 국제대회의 국내유치 등 스포츠외교 전반에 걸친 정책을 검토하여 한국 삼보 포츠의 외교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.**

- 대한삼보연맹의 스포츠외교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
- 국제경기대회 및 국제 회의 참가, 국제경기대회 및 회의 국내유치 관련 제반사항
- 국제스포츠계에 대한 대한삼보연맹의 홍보 및 스포츠 외교활동 전개
- 대한삼보연맹 발전과 관련하여 국제삼보연맹 및 가맹국과의 관계 촉진
- 각국 삼보연맹과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국제스포츠교류 강화
-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〈 위원 선임 요건 〉

◆ 대한삼보연맹과 국제삼보연맹 등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소유하고 영어 대화가 가능한 사람
◆ 외국에서 스포츠 분야에 3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러시아어 대화가 가능한 사람
◆ 국제협력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
◆ 기타 이사회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

4 여 성 위 원 회

○ **여성체육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 조사하고 시행하여 여성 삼보인구의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기 위함.**

- 여성삼보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- 여성삼보행사에 관한 사항
- 여성삼보 유관단체와의 관계촉진 및 교류에 관한 사항
- 여성삼보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-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〈 위원 선임 요건 〉

◆ 대한삼보연맹 또는 지역삼보연맹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.
◆ 삼보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직 교수 및 5년 이상 교수, 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
◆ 여성삼보선수로 5년 이상의 연맹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
◆ 기타 이사회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

5 생활체육위원회

○ **다양한 계층이 삼보를 쉽게 접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생활체육으로 체계적으로 보급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감을 목적으로 함.**

- 생활체육 삼보의 진흥에 관한 사항
-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삼보체육관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항 사항
-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스포츠클럽 삼보대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〈 위원 선임 요건 〉

◆ 삼보지도자(관장 포함)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
◆ 스포츠 관련 지도자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
◆ 기타 이사회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

6 대 회 위 원 회

○ **각종 대회 및 경기운영의 지원과 결과를 분석, 평가하고 각종 대회와 경기 발전을 위한 조언 및 자문과 시행을 통해 대회개최의 내실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**

- 각종 대회 개최계획의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
- 국내 각종 대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
- 국내 각종 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국내 각종 대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
- 대회 및 경기 관련 부문별 회의의 주관 및 진행
- 포상 및 징계 관련 자료의 제공
-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〈 위원 선임 요건 〉

◆ 각종 스포츠대회를 5년 이상 추진한 경력이 있는 사람
◆ 기타 이사회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

7 홍보·미디어위원회

○ **대한삼보연맹 및 삼보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홍보전개의 확대를 통해 연맹의 위상 강화와 인식을 제고하고 삼보를 널리 홍보하여 삼보발전에 기여해 나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.**

- 대한삼보연맹이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
- 국내 및 국제삼보대회 홍보에 관한 사항
- 대한삼보연맹의 국외 홍보 및 연맹 위상 및 인식제고 홍보사항
- 생활체육 삼보 진흥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-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
- 국내 언론보도 및 언론단체에 관한 사항
-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〈 위원 선임 요건 〉

◆ 삼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.현직 언론인
◆ 홍보 및 미디어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.
◆ 기타 이사회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

8 심 판 위 원 회

○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, 심판으로서의 역할, 임무,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시행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- 심판의 독립성,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
- 심판의 권익 보호·증진에 관한 사항
- 심판양성 교육(심판 아카데미)에 관한 사항
-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
- 연맹이 주최 및 주관, 후원하는 경기대회의 심판업무에 관한 사항
- 심판 강습 및 자격 시험 계획 수립
- 국제심판 후보 선발에 관한 사항
-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〈 위원 선임 요건 〉

◆ 대한삼보연맹 회원으로 국제심판 및 국내심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
◆ 대한삼보연맹에서 3년 이상의 심판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
◆ 기타 이사회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

9 선 수 위 원 회

○ 선수의 권익을 보호,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.

- 각종 국내외 대회 관련,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
- 선수 권익 보호,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- 선수등록 업무 및 선수등록 규정 심의에 관항 사항
- 정정당당한 운동선수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
- 선수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선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홍보
- 각종 현안에 대해 선수 및 연맹과의 소통채널을 유지
- 대한삼보연맹 활동 홍보 및 행사 참여
-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

〈 위원 선임 요건 〉

◆ 현직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선수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

◆ 기타 이사회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

10 교 육 위 원 회

❍ 삼보스포츠 종목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삼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전지도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삼보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- 삼보의 교육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
- 삼보 지도자 및 선수 육성에 관한 사항
- 지도자 보수교육 계획의 수립, 시행에 관한 사항
- 삼보와 연계한 안전 및 응급처치법 등의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각종 강습회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〈 위원 선임 요건 〉

◆ 대한삼보연맹에서 지도자 및 심판교육 등을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◆ 삼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관련 현직 교수 및 교사로 근무중인 사람

◆ 기타 이사회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

국제삼보연맹 위원회

○ 선수위원회 / 선수 앙투라지(주변인) 위원회 / 장애인선수위원회 / 발전위원회 / 징계위원회 / 윤리위원회 / 재정위원회 / 법률위원회 / 마케팅·언론위원회 / 의료·도핑위원회 / 기술위원회 / 스포츠와 활발한 사회위원회 / 스포츠계여성문제위원회